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(홍기원의원·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홍기원·김 건·박해철
황명선·안철수·윤종균
윤후덕·문정복·송석준
서미화·임호선·부승찬
강경숙·강준현·박은정
김예지·안상훈·최형두
이성윤·한민수·권영세
이주희·양부남·복기왕
박민규·민홍철·임미애
천하람·이재강·이주영
곽상언·김용만·김영배
이재정·최혁진·장종태
의원 (3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,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.

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·안보의 영

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,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1항).

※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경제외교”를 “경제통상외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외교부)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, <u>경제외교</u> 및 국제경제협 력외교,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, 조약 기타 국제협정, 재 외국민의 보호·지원, 국제정세 의 조사·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	제33조(외교부) ① ----- ----- <u>경제통상외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